경영유의사항 공개안

1. 금융기관명 : 크레디아그리콜은행 서울지점

2. 조치일 : 2024. 3. 22.

3. 조치내용

대 상	내 용
기 관	경영유의사항 1건

4. 조치대상사실

가. 경영유의사항

(1) 외국환업무 내부통제 강화

「외국환거래법 시행령*」에 따르면 은행 등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업무취급 관련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위험관리 체제를 구축·운용하여야 하나, 외환시장 운영시간 연장 및 전자거래 활성화(고도화)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관련 업무를 강화할 필요

* 제17조(업무 수행에 관한 기준) 제3호

㉮ Front-Office 관련 내부통제 강화

은행은 야간시간대에 딜러가 상주하여 거래할 수 있는데도 딜러별 업무분장 등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, 향후 전자거래 활성화시 프로그램 매매 유입 등으로 인한 대규모 환포지션 노출 가능성 등이 우려되나 알고리즘 거래 관련 통제절차를 마련하지 않는 등 외환시장 운영시간 연장 관련 대비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음

따라서 은행은 야간데스크 운용을 위한 매뉴얼 등을 마련하고, 알고리즘 거래 관련 포지션 관리방안 등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람

㉯ Middle-Office 관련 내부통제 강화

은행은 야간거래에 대하여 익일 외환시장 개장 전까지 손실·포지션·민감도 한도 등을 측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지 않아 Front-Office(딜링룸)의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이 취약할 우려가 있음

따라서 은행은 익일 외환시장 개장 전까지 전일자 거래(야간거래 포함)에 대한 손실·포지션·민감도 한도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리스크 모니터링 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

㉱ Back-Office 관련 내부통제 강화

은행은 역외금융기관(RFI :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)의 야간거래와 관련한 업무처리절차 및 기준을 명확히 정하지 않아 원화 결제 대행업무 및 규제보고서 보고 대행업무 등에서 오류 발생이 우려되며, 현물환 상품 결제 업무 등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는 상황임

따라서 은행은 역외금융기관의 위탁업무에 대한 업무처리절차 및 기준을 정비하고, 결제망 마감시간을 고려한 현물환 상품 운용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업무절차를 정비하시기 바람